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67
----------	--------

제안년월일 : 2021년 09월 08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셜벤처기업의 정의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위원회 구성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셜벤처’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 소셜벤처 기본계획을 종전의 3년에서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수정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신설함(안 제5조, 안 제6조).
- 소셜벤처의 법적요건이나 소셜벤처에 해당하는지 확인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이므로 조례에서 삭제함(안 제7조, 안 제8조).
- 소셜벤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소셜

벤처 지원에 관한 사항' 을 신설함(안 제9조).

- '소셜벤처지원센터' 를 현행 기관명칭에 부합하도록 '소셜벤처허브' 로 수정함(안 제12조).
- 공유지에 대한 임대 및 무상임대와 불용물품 무상양여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함(안 제14조).
- 사회투자기금의 소셜벤처에 대한 사용 근거는 해당 조례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이므로 삭제함(안 제15조).
- 소셜벤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예산지원 근거, 소셜벤처 제품 우선 구매 지원은 상위법령에서 위임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삭제함 (안 제16조, 안 제17조).
- 사회성과보상사업과의 연계는 해당 조례인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 사업 운영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함(안 제18조).
- 소셜벤처 협의기구, 소셜벤처간 조직에 대한 지원은 관계법령의 위임 근거가 부족하여 삭제함(안 제19조).
- 소셜벤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는 해당 조례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함(안 제20조).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1. “소셜벤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을 말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 제목을 “실태조사 및 평가”로 하고, 제1항 중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로 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를 각각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로 한다.

안 제7조(중전의 안 제9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중전의 안 제11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안 제10조(중전의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소셜벤처허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셜벤처허브(이하 “허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셜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소셜벤처 투자·컨설팅 등 지원
3. 소셜벤처 판로지원 및 자원연계
4. 소셜벤처 육성·성장을 위한 교육 및 경영지원(경영·법률·세무 등)
5. 소셜벤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소셜벤처 육성·지원 관련 정책 연구
7. 그 밖에 소셜벤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브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허브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청장이 허브를 설치하는 경우 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를 각각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로 한다.

안 제12조(중전의 안 제15조) 제목을 “재정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3조(중전의 안 제16조) 중 “① 시장은” 을 “시장은” 으로, “실시할 수 있다.” 를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19조부터 안 제23조까지를 각각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로 한다.

안 제14조(중전의 안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소셜벤처 협의기구 등과의 협력) 시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벤처 협의기구 등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5조(중전의 안 제20조) 중 “① 시장은” 을 “시장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17조(중전의 안 제22조)제1항 중 “소셜벤처에” 를 “소셜벤처”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벤처 지원과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제정안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소셜벤처”란 <u>지속가능한 수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법인·단체를 말한다.</u></p> <p>2. “소셜벤처 생태계”란 소셜벤처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p> <p>3. “사회적 가치”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치를 말한다.</p> <p>4. “사회성과”란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성과를 말한다.</p> <p>5. “소셜벤처 협의기구”란 소셜벤처 간 자율적으로 설립한 연대조직 또는 관계망 형태의 모임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소셜벤처”란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u>」 제2조제10항에 따른 <u>소셜벤처기업</u>을 말한다.</p> <p>2.~ 3. (제정안과 같음)</p> <p><삭제></p> <p>4. (안 제5호와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소셜벤처 및 소셜벤처 협의기구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조 (제정안과 같음)</p>

제정안	수정안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셜벤처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조(소셜벤처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소셜벤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셜벤처 생태계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소셜벤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셜벤처에 대한 민간 투자 연계 및 확대에 관한 사항 6. 소셜벤처를 통한 사회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소셜벤처 협의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u>기본계획의 수립·시행</u>을 위하여 소셜벤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신설></p>	<p>제4조 (제정안과 같음)</p> <p>제5조(소셜벤처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소셜벤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시장은 <u>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u> 위하여 소셜벤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p>

제정안	수정안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협의기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소셜벤처의 요건) ① 소셜벤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p> <p>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p> <p>3.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마을기업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자활기업</p> <p>② 제1항 이외에도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과 법인·단체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소셜벤처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p> <p>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p>	<p><u>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③ (제정안 제2항과 같음)</p> <p><삭제></p>

제정안	수정안
<p><u>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u></p> <p>3.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p> <p>4.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p> <p>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p> <p>제8조(소셜벤처의 확인)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기업·법인·단체가 소셜벤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법인·단체가 소셜벤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업·법인·단체가 소셜벤처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셜벤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p><신설></p>	<p><삭제></p> <p>제7조(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제정안과 같음) 3.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사항

제정안	수정안
<p>3. 그 밖에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소셜벤처 업무 담당 국장 3. 소셜벤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4. 소셜벤처 경영자 및 협의기구 관계자 5. 그 밖에 소셜벤처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p>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p>	<p>4. (안 제3호와 같음)</p> <p>제8조 (안 제10조와 같음)</p> <p>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 ④ (제정안과 같음)</p>

제정안	수정안
<p>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설></p>	<p>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
<p>제12조(소셜벤처지원센터의 설치·운영)</p> <p>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소셜벤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u>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셜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u> 2. <u>소셜벤처 공간, 회의장, 운영 장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u> 3. <u>소셜벤처 발굴에 관한 사항</u> 4. <u>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u> 5. <u>그 밖에 시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신설></p> <p><신설></p>	<p>제10조(소셜벤처허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소셜벤처허브(이하 “허브”라 한다)</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셜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u> 2. <u>소셜벤처 투자·컨설팅 등 지원</u> 3. <u>소셜벤처 판로지원 및 자원연계</u> 4. <u>소셜벤처 육성·성장을 위한 교육 및 경영지원(경영·법률·세무 등)</u> 5. <u>소셜벤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u> 6. <u>소셜벤처 육성·지원 관련 정책 연구</u> 7. <u>그 밖에 소셜벤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u>

제정안	수정안
<p>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구청장이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소셜벤처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통합적인 경영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4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소셜벤처 지원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용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및 무상 임대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소셜벤처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p> <p>제15조(재정지원 및 사회투자기금의 사용)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 가치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 2. 소셜벤처 협의기구 지원 3. 지역별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p><u>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브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허브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구청장이 허브를 설치하는 경우 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 (안 제13조와 같음)</p> <p><삭제></p> <p>제12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 가치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 2. 소셜벤처 협의기구 지원 3. 지역별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제정안	수정안
<p>4. 소셜벤처 공간 지원</p> <p>5. 소셜벤처 판로확대 지원</p> <p>② 제1항의 재정지원 대상,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u>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u></p> <p>제16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시장은 소셜벤처 인재양성, 소셜벤처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소셜벤처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u>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u></p> <p>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소셜벤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u>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소셜벤처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u>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17조(우선 구매 등 지원) ① 시장 또는 <u>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소셜벤처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은 <u>소셜벤처의 재화나 서비스</u></p>	<p>4. 소셜벤처 공간 지원</p> <p>5. 소셜벤처 판로확대 지원</p> <p>② 제1항의 재정지원 대상,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삭제></u></p> <p>제13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u>시장은 소셜벤처 인재양성, 소셜벤처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소셜벤처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u></p> <p><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제정안	수정안
<p><u>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u></p> <p><u>③ 시장은 소셜벤처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 민간위탁 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u></p> <p><u>제18조(사회성과보상사업과의 연계) ①</u> <u>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성과보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셜벤처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u></p> <p><u>제19조(소셜벤처 협의기구 등의 지원) 시</u> <u>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지원을 위하여 민간의 주도로 광역 및 자치구 단위, 업종 단위를 기준으로 설립하는 소셜벤처 협의기구나 소셜벤처간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제20조(국제 협력 등 지원) ①</u> 시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②</u> 시장은 <u>소셜벤처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u></p> <p><u>제21조(지도·감독) ①</u>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소셜벤처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u>②</u>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소셜벤처가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p>	<p><u><삭제></u></p> <p><u>제14조(소셜벤처 협의기구 등과의 협력)</u> <u>시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벤처 협의기구 등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u></p> <p><u>제15조(국제 협력 등 지원) 시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삭제></u></p> <p><u>제16조 (안 제21조와 같음)</u></p>

제정안	수정안
<p>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소셜벤처</u>에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소셜벤처</u>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안 제2항과 같음)</p> <p>제18조 (안 제23조와 같음)</p>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벤처 지원과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벤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을 말한다.
2. “소셜벤처 생태계”란 소셜벤처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치를 말한다.
4. “소셜벤처 협의기구”란 소셜벤처 간 자율적으로 설립한 연대조직 또는 관계망 형태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소셜벤처 및 소셜벤처 협의기구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셜벤처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셜벤처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소셜벤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셜벤처 생태계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소셜벤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셜벤처에 대한 민간 투자 연계 및 확대에 관한 사항
6. 소셜벤처를 통한 사회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소셜벤처 협의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셜벤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협의기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소셜벤처 업무 담당 국장
 3. 소셜벤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4. 소셜벤처 경영자 및 협의기구 관계자
 5. 그 밖에 소셜벤처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소셜벤처허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셜벤처허브(이하 “허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셜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소셜벤처 투자·컨설팅 등 지원
 3. 소셜벤처 판로지원 및 자원연계
 4. 소셜벤처 육성·성장을 위한 교육 및 경영지원(경영·법률·세무 등)
 5. 소셜벤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소셜벤처 육성·지원 관련 정책 연구
 7. 그 밖에 소셜벤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브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허브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구청장이 허브를 설치하는 경우 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소셜벤처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통합적인 경영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가치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
2. 소셜벤처 협의기구 지원
3. 지역별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4. 소셜벤처 공간 지원
5. 소셜벤처 판로확대 지원

② 제1항의 재정지원 대상,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시장은 소셜벤처 인재양성, 소셜벤처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소셜벤처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소셜벤처 협의기구 등과의 협력) 시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벤처 협의기구 등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국제 협력 등 지원) 시장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소셜벤처 등에 대하여 지원 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소셜벤처가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셜벤처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